환경권과 건강권

김건열 / 서울의대 교수, 서울대 보건진료소장

대한민국헌법 제2장 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어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환경권과 건강권이 헌법에 주어져 있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는 환경권, 건강권이 국민에게 헌법상으로 주어져 있어 내가 병에 걸리면 나라에서 치료해주어야 되고 생활환경도 병에 안걸리게끔 깨끗하게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법도 하다. 특히 요즘들어 우리의 주거환경이 마시는 공기, 먹는 음식, 수도물 할 것 없이 모두다 오염되어, 먹는 물을 사먹고, 공기도 산소를 사서 마시느니하는 이야기가 사회에 팽배해지는 요즈음, 환경권과 환경오염으로 인체(人體)에 발생하는 환경유인성질환(公害病이라고도 말함)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대한의학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관으로 「환경공해와 국민건강권」 주제하에 공동「세미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바, 거기에 의사협회측 주제발표를 준비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점은 우리나라의 강(江)과 국민의 의식수준 및 사회여건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보호받기에는 아직 미흡한 현실이라는 것이였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국민의 환경권의 침해가 있어 그것을 구제하는 법적구제절차(法的救濟節次)에 있어서 환경법 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인용(引用)하여 「환경권의 내용이나 행사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점에서 대한민국의 입법부나 행정부가 그 환경권을 장식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현행법의 보충적 입법(立法)이 필요하고 시민소송제도(市民訴訟制度)라도 허용하는 입법의 개혁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라고 설파하고있어 헌법35조에 그럴사하게 규정되어있는 환경권이 실행될 수 없는 법률용어에 불과함을 알게 해주고 있었다.

둘째로 공해병(환경유인성질환)이라는 애매한 병명자체의 정의와 우리지역사회에 산재하는 고혈압, 폐기종, 만성위장염, 퇴행성관절염 등 성인병과 환경오염으로인한 공해병과의 감별진단을 어떻게 현대의 과학적방법으로 해야되며, 어떠한 한계점이 있는가 등에 대해서 의학적측면에서 거론이된 바 있으나, 역시 이

방면의 토의에 있어서도 공해병(公害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회계층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비과학적 접근의 목소리가 클 수 있다는 어려움을 알게 해주었다.

셋째로는 환경오염과 환경권의 주장에 있어서 우리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이며 피해는 나뿐만 아니라 내자손에게까지 미친다는 생각」을 소홀히 한 채 환경정화는 남이, 나라에서 해주어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오염원이되는 자기스스로의 생활을, 자기의 분담책임을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에너지」소비는 곧 환경오염에 직결되며, 우리사회의 큰 폐단인 「과소비습관」은 가장 큰 오염원이라는 것이 인식되어야하며, 나 스스로의 노력이 우리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하리라고 생각해왔고 이는 헌법조문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국민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는 현재 남을 덜 믿는, 남을 의심하는 불신사회가 돼가고 있고, 모든

>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적구제입법도 서두르는 한편 법앞에 나서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임무를 지킨다는 것도 자기건강,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일이다.**

사회의 어려운 문제는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을 비난하는 사회풍조가 자라나는 젊은 세대간에 팽배하고 있음을 보며, 이는 특히 환경오염을 거론할 때 더 그런 생각을 저버릴 수 없게 된다. 내몸에 생기는 병은 나의 나쁜 생활습관 때문에 발병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내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공해병(公害病)도 내 생활습관과 주거환경오염이 겹쳐 발생하는 것이므로 남을 탓하고 남에게 의존하는 생각을 갖기전에 내가 할 일, 내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할 일부터 실행하고 그리고 나서 법적(法的) 구제를 신청하던가 그것이 인정되어 법적보호를 받든가 하는 순서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간(人間)의 모든 질병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발된다. 이 「스트레스」는 서로 못믿는 사회(社會)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에게는 언제나 붙어다니는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적구제입법도 서두르는 한편 법앞에 나서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의무를 지킨다는 것도 자기건강,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다. ✝